사회봉사활동운영규칙 4-2-16

규정번호 4-2-16
제정일자 2015.5.13
최근개정 2024.7.24
개정차수 6차 개정
관리부서 선교지원팀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명지전문대학의 설립정신 구현과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8.2.5.)

제2조(정의) “사회봉사활동”이라 함은 사회의 이익이나 복지향상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하는 활동을 말한다.(신설 2018.2.5.)

제3조(주관부서 및 관리부서) ①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등은 기획실, 교무처, 학생지원처 및 사무처의 지원을 받아 교목실에서 주관한다.(신설 2018.2.5., 개정 2021.03.15., 2022.12.12)

② 구성원별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은 해당 관리부서로 별도 관리·운영한다.(신설 2018.2.5.)

제4조(사회봉사활동운영위원회) ① 우리대학의 사회봉사에 관한 제반 업무의 운영 및 심의를 위해 사회봉사활동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(신설 2018.2.5.)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목실장으로 하고, 위원회는 기획실장, 교무처장, 학생지원처장, 사무처장, 명지지역상생협력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교직원으로 9인 이내로 구성한다.(신설 2018.2.5., 개정 2018.08.27.,2022.12.12)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(신설 2018.2.5., 개정 2024.7.24)

④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.(신설 2018.2.5.)

1. 사회봉사 프로그램개발 및 연간 계획 수립
2. 사회봉사활동 년간 보고서 및 평가 보고서 작성
3. 사회봉사상의 추천(교원, 직원, 학생)
4. 기타 사회봉사와 관련된 사항

제2장 교 원

제5조(교원의 사회봉사활동) 교원의 사회봉사 활동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(개정 2018.2.5.)

① 정부, 지자체, 국제기관, 공공기관, 산업체 지원 활동

② 비영리 민간 및 공공단체(사회복지기관, 지역사회 봉사단체, 교회 등) 지원 활동

③ 대학 및 교육기관의 각종 평가 및 교육개혁 관련 활동

④ 지방자치단체, 교육기관, 공공기관, 전문학회 등에서의 축제, 심사(심의), 평가, 채점 등의 위원활동

⑤ 국내・외 학회 임원 및 위원 활동

⑥ 국제기관, 정부기관, 공공단체, 국내・외 학술회의, 기타 산업체 초청 사회, 토론, 발표

⑦ 언론매체 기고, 사회자, 토론자, 출연자 참여

⑧ 학생 봉사활동 지도

⑨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각종 사회봉사 활동

제6조(교원의 사회봉사활동 지원) 대학은 교원의 사회봉사를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등 제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 (개정 2018.2.5.)

제7조(사회봉사활동 실적관리) 교원의 사회봉사 실적을 교수업적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.(개정 2018.2.5.)

제8조(교원 사회봉사상) 교원의 사회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여 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직원에게는 사회봉사상을 수여할 수 있다.(개정 2018.2.5.)

제3장 직 원

제9조(직원의 사회봉사활동) 직원의 사회봉사 활동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(개정 2018.2.5.)

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 활동

② 비영리 민간 및 공공단체 지원 활동(사회문화단체, 체육단체, 장학단체, 사회 복지기관 및 종교단체 등)

③ 대학의 각종 평가 및 교육개혁 관련 활동

④ 공공기관 의뢰, 교육, 강연, 평가, 출제, 심의위원 활동

⑤ 국내·외 학회 임원 및 학술지 편집위원

⑥ 특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, 교육 및 특별강연

⑦ 산업체 기술경영 지도 및 자문

⑧ 학생 봉사활동 지도

⑨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각종 사회봉사 활동

제10조(직원의 사회봉사활동 지원) 대학은 직원의 사회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봉사활동 수행에 필요한 예산 등 제반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(개정 2018.2.5.)

제11조(사회봉사활동 실적관리) 사회봉사 활동 실적은 명지학원 일반직원 인사평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.(개정 2018.2.5.)

제12조(직원 사회봉사상) 직원의 사회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여 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직원에게는 사회봉사상을 수여할 수 있다.(개정 2018.2.5.)

제4장 학 생

제13조(학생의 사회봉사활동) 학생의 사회봉사 활동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(개정 2018.2.5.)

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 봉사활동(노인복지시설, 장애인복지시설, 보육시설, 지역사회 복지관 등)

② 공공기관 봉사활동(구청, 동사무소, 소방서, 우체국, 도서관, 보건소, 학교 등)

③ 사회공익 봉사활동(환경보호활동, 청소년 지도활동, 시민 공익단체 등)

④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인가받은 봉사기관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

⑤ 지역사회 봉사활동(농촌 봉사활동, 탄광촌 봉사활동, 수해지구 봉사활동 등)

⑥ 가정복지 봉사활동(장애인 가정, 무의탁 노인, 소년소녀 가장 세대의 봉사활동 등)

⑦ 공인 기관(대학사회봉사협의회, 한국장학재단 등)에서 실시하는 해외 봉사활동

⑧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사회단체 기관 및 시설에서의 봉사활동

제14조(학생의 사회봉사활동 지원) 대학은 학생의 사회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예산 등 제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 (개정 2018.2.5.)

① 사회봉사활동 운영에 대한 심의, 평가 등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담당한다.

② 사회봉사활동 지원에 대한 신청방법, 제출서류, 선발방법, 지원금의 지급방법 등은 사회봉사활동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.

③ 사회봉사활동 지원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사회봉사활동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.

④ 학생이 개인 또는 팀별로 국내의 공인된 외부기관 프로그램에 응모하여 선정된 경우, 학생의 사회봉사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봉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⑤ 사회봉사활동을 마친 학생은 사회봉사활동 결과 보고서 또는 봉사기관 발급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등 우리대학에서 정한 자료를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 2017.02.27., 2018.08.27.)

제15조(재해책임) 학생이 사회봉사 활동기간 중 부상 등을 입거나 봉사대상 기관의 재산 등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학생 본인이 비용부담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.(개정 2018.2.5.)

제16조(학생 사회봉사상) 사회봉사활동 수행 실적이 우수한 학생은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회봉사상을 수여할 수 있다.(개정 2018.2.5.)

제17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칙에 따른다. (신설 2015.03.16., 개정 2018.2.5.)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3월 16일부터 시행하되,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,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(제3조제1항, 제4조제2항)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제4조제3항)